

## NEWSLETTER

July 2020

국제소송 그룹  
International Litigation Group

## CONTACT



변호사 이경훈

T: 02.772.4419  
E: [kyunghoon.lee@leeko.com](mailto:kyunghoon.lee@leeko.com)

변호사 임지웅

T: 02.772.4830  
E: [jiwoong.lim@leeko.com](mailto:jiwoong.lim@leeko.com)

변호사 김진욱

T: 02.6386.6353  
E: [jinkyuk.kim@leeko.com](mailto:jinkyuk.kim@leeko.com)**코로나19: 불가항력(Force Majeure) 관련 한국법상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고, 각국의 산업과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업들은 영미법 등을 준거법으로 한 계약에서 논의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계약 목적 달성의 불능(frustration of contract),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hardship) 등의 법리를 기초로 기존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 및 제한조치 자체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영미법계에서 논의되는 불가항력, 계약 목적 달성의 불능, 사정변경의 원칙 등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상 불가항력의 의의 및 요건 등**

불가항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민법과 상법 등 여러 법령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불가항력에 대한 별도의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한국법상 불가항력의 개념을 비롯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원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에서도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 또한 불가항력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가항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발생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 하였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다음은 불가항력에 관한 한국 법원의 대표적 판례들입니다.

- ✓ 리비아 내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리비아에 대한 여권사용 제한국(흑색경보: 여행 금지) 지정을 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경우 불가항력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545837 판결).

- ✓ 1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 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한 경우에 불가항력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 48057 판결).
- ✓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 ✓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재해를 회피하거나 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였던 경우 등에는 불가항력을 부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어떤 사건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문제된 사건이 계약 당사자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는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2) 해당 사건이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상당 인과관계의 존부) 등의 요소들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불가항력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안적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및 제한조치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례들이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불이행(이행 지체 등)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거나, 계약과 관련한 사정변경 사유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의무 등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법상 계약 목적 달성의 불능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

영미법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계약 목적 달성의 불능 관련 법리는, 계약 당사자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당초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던 계약상 의무의 성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영미법에서는 통상 일방 당사자의 계약 목적 달성의 불능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와 같은 영미법상 계약 목표 달성의 불능 법리와 유사한 한국법상 제도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해당 쌍무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의무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

영미법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법리는,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당초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대안으로 하여 기존 계약관계를 재협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법리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다만, 실무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장(항변)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결론 및 대응 방안 안내

코로나 19가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기업들이 불가항력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마주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불가항력과 계약 목적 달성의 불능,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법률적 재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서상 코로나19 등과 관련이 있는 계약 조항(예컨대, 불가항력 조항)이 존재 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 및 파악.
- ✓ (계약상 불가항력 관련 조항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문언 등을 기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불가항력적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진행경과, 영향 등에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보존.
- ✓ 추후 상대방과 사이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언이나 구두 약속 등을 하기 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

한편,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불리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한국법상 이행거절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의무이행의 중단을 선언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법률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유의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추가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